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약제조업자 등 지위 승계자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근거 신설〉

■ 박형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78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농약제조업자 등 지위 승계자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근거 신설 (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박형수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2. 26.

다. 회 부 일 : 2026. 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품방제업자등(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함)이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제조업자 등이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제조업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2023년 7월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하려는 사례가 빈발해짐에 따라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권고(제 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 받으려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농약제조업자 등 지위 승계자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근거 신설(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현행법은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¹⁾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제조업자등이 그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영업자(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에게 부과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영업을 양수하려는 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가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양수인이

1) 「농약관리법」

제5조(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1.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생략)

제3조(영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의2(영업의 신고) ① 방제업 중 수출입식물방제업 또는 항공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생략) <u><신 설></u>	제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조업자등(피상속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얻어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현행법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양도인의 위법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효과까지도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인 및 양수인이 상호 공모하여 영업을 양도·양수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행정처분을 받은 양도인이 그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사업을 양도할 경우 선의의 양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법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양수인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²⁾,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양수인이 양도인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관리하고 있어³⁾ 행정처분 이력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2) 「농약관리법」

제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품방제업자등에게 행한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의 승계 시에 그 행정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원사례(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부당한 행정제재 효과 승계 없앤다”, 2023.05.11.)

· 씨는 영업시설 양수를 고려하면서 ‘행정처분 승계 내역을 알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행정청은 ‘행정처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본인이 아닌 경우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에 개정안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양수인이 기존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양수인이 영업 승계 이전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등 13개 부처에 권고한 바 있음⁴⁾.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방지 방안」 31쪽(국민권익위원회, 2023.07.10.)

구 분	조치사항 및 관련법령	대상기관
⑤ 선의 보호 및 용이한 입증을 위한 규정 도입	○ 행정처분 전력 및 위반행위 사실을 양수인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편법 양도를 방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제34조 등 43개 규정에 반영	농림축산식품부 등 13개 기관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⁵⁾.

5)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